

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
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.

- 1)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- 2)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
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

- 1)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 규정에 따라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계획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: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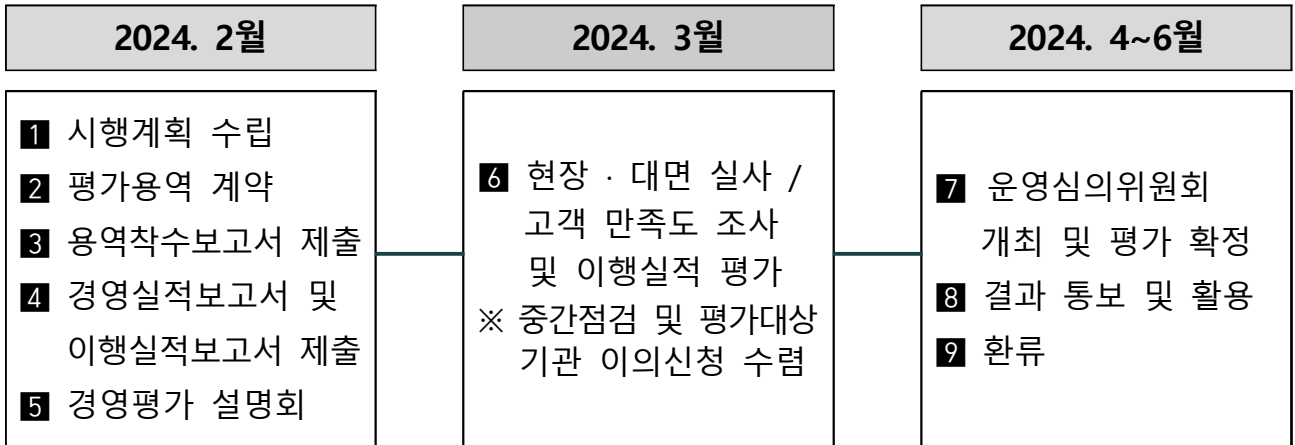
나. 평가 내용

- 1) 금천문화재단(2023년도 실적) 기관 경영평가
- 2) 금천문화재단(2023년도 실적) 대표이사(3기) 성과평가
 - ▶ 경영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후,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

다. 평가 방법 : 외부 전문기관 용역(수의계약)

- 1) 소요예산 : 16,000천원(구비)
- 2) 용역기간 : 2024. 2월 중 ~ 6월 중(약 4개월)

3. 평가일정표



4. 참고사항

가.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지표(요약표) - [붙임1]

나. 2024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(요약표) - [붙임2]

※ 용역 수행 시 변경 가능

다. 관계 법령 - [붙임3]

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
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[붙임1]

금천문화재단 「기관」 경영평가 지표(안)

평가영역	평가부문	평가지표	배점	비고
경영관리 (55점)	리더십 (12점)	1. 경영층의 리더십	6.00	
		1) 경영층의 리더십	2.00	정성
		2)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	2.00	"
		3)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 해결 노력과 성과	2.00	"
		2. 전략경영	6.00	
		1)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의 적정성	4.00	정성
	2)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	2.00	"	
	경영시스템 (20점)	1. 조직·인사관리	8.00	
		1) 조직·인사관리의 적정성	4.00	정성
		2) 지원기능인력 비율	1.00	정량
		3) 관리직 비율	1.00	"
		4)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	1.00	"
		5) 임·직원 교육실적	1.00	"
		6) 채용비리 방지(감점)	△1.50	"
		7)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(감점)	△1.00	"
		2. 재무관리	12.00	
		1) 재무관리의 적정성	5.00	정성
		2) 자체수입률	1.00	정량
		3) 일반관리비충당률	1.00	"
		4)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	1.00	"
		5)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	1.00	"
	6) 조달계약실적	1.00	"	
	7) 인건비 인상률 준수	1.00	"	
	8)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	1.00	"	
	일자리 확대 (5점)	1. 일자리 창출 및 일·가정 양립	5.00	
		1)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	2.00	정량
		2)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	1.50	정성
		3) 일·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	1.50	"
		4)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(가점)	+0.50	정량
		5)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(가점)	+1.00	"
	사회적 책임 (18점)	1. 소통 및 참여	4.00	
		1) 고객 및 주민참여	1.00	정성
2) 공공노사 관계 구축 및 유지 노력		1.00	"	
3)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운영의 적절성		1.00	"	
4)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준수		1.00	정량	
2. 윤리경영		2.00		
1) 윤리경영체제 구축·운영 노력과 성과		1.50	정성	
2) 기록관리 개선 노력과 성과		0.50	"	
3. 인권경영		2.00		
1)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		1.00	정성	
2) 인권경영의 실행 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		0.50	"	
3)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		0.50	"	

평가영역	평가부문	평가지표	배점	비고	
		4. 재난·안전관리	5.00		
		1) 재난·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	1.00	정성	
		2)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·관리 역량 강화 노력	1.00	"	
		3) 재난·안전관리체계 운영의 적절성	2.00	"	
		4) 안전사고 건수	1.00	정량	
		5. 지역상생발전	5.00		
		1)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 사업 추진 실적	2.00	정성	
		2)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	1.00	혼합	
		3) 지역상생 구매 실적	1.50	정량	
		4) 친환경 경영	0.50	"	
	경영 성과 (45점)	사업성과관리 (10점)	1. 사업성과 관리의 적절성	10.00	
			1)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설정 및 관리·수행 노력의 타당성	5.00	정성
			2) 자치단체 운영방향과 연계성	2.00	"
3) 신규사업 발굴 노력			3.00	"	
경영효율성과 (30점)		1.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	5.00	정량	
		2. 전시공람용 공간 가동실적	3.00	"	
		3. 도서관 운영 활성화	6.00	"	
		4. 문화예술 향유	4.00	"	
		5. 문화예술 지원	4.00	"	
		6. 문화복지	4.00	"	
		7. 문화예술 교육	4.00	"	
고객만족성과 (5점)		1.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	5.00		
		1) 당해연도 평가	3.00	정량	
	2)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	2.00	"		
계			100.0		

[붙임2]

금천문화재단 「대표이사」 성과평가지표(안)

구분	평가영역	평가부문		평가방법	배 점	비 고
기반과제	리더십	리더십		기관 평가 연동	30.00	기관 경영평가결과 점수 환산
		전략				
	경영시스템	조직·인사관리			20.00	
		재무관리				
성과과제	경영성과	사업성과관리			30.00	
		경영효율성과				
		고객만족성과				
	사회적 가치	일자리 확대		20.00		
		사회적 책임				
가점 및 감정사항	가점	정부부처, 광역 자치단체 (산하기관) 인증 및 표창 수상	기관 표창	정량	+1.00 (건당)	
			개인 표창	정량	+0.50 (건당)	
	감점	사회적 물의 보도		정량	-1.00 (건당)	

※ 상기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지표는 2023년 실시한, 2024년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편람,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며, 용역 착수 후 지표세부내용(지표별 정량 혹은 정성평가, 배점조정 등)은 변경될 수 있음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/ 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
3. 전년도 결산서 / 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
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
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제10조(평가의 종류) 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
2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
3.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

제16조(평가의 활용)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